Jisung Horizon Newsletter

September 2010 Vol.3. No.24

01 화제의 지평지성 판례

-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09다105253 2010.07.29 파기환송)

(정원 변호사)

04 열려라 중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외상투자기업 관련 분쟁 해결 사법 해석 발표 (김옥림 중국변호사)

08 생생 러시아

- 양허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연 민간투자사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1 최신법령

-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의 부과 등
-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준 완화
- 아동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 범위 확대

13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15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Asian Counsel 주관 'Firm of the Year 2010'로 선정

16 업무동향

- 지평지성, 코스모화학의 새한미디어 인수관련 매각자문 제공

17 지평지성 단신

- 이호원 대표변호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거래법 관련 연구 중
- 금태섭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미국형사법' 강의
- 임성택 변호사, '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정책토론회 참석 外
- 명한석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협회 법제연구회 및 지경부 주최 전문가 포럼 참석
-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에서 '기업실무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 강의
- 최정식 변호사, 지식경제부 주관 CHINA DESK 상하이 현지 자문위원으로 위촉

21 영입인사

- 김광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http://www.js-horizon.com E-mail: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화제의 지평지성 판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09다105253 2010.07.29 파기환송)

정원 변호사

A이동통신사와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갑은 계약기간 중 137대의 단말기(5,300여 만원 상당)를 공급받고도 대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단말기가 판매되지 않은 이상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① 이동통신사 위탁대리점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업무이며, 단말기 판매는 가입자 모집에 부수된 업무인 점, ② A이동통신사가 그 동안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서 일부 대리점으로부터 재고 단말기를 현물로 반환받은 사실, ③ 위탁대리점계약에 의할 때 단말기 공급가격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가격협의가 없었던 점, ④ 이동통신사는 판매정책에 따라 수수료 이외에도 영업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단말기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러한 단말기 가격은 수시로 변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피고 사이에는 단말기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장려금 등을 고려하여 그 판매가격을 협의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위임받은 다음 먼저 고민하게 된 것은 으뜸으로 제시할 상고이유를 무엇으로 할지, 원심판결이 반드시 파기되어야만 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였습니다. 상고사

건의 심리불속행기각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심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과 같은 상투적인 상고이유를 나열하는 것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투망식(投網式)으로 여러 상고이유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상고이유 한 둘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상고이유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였습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 확립한 법리입니다. 위탁대리점계약은 "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문언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인용한 사정들을 제시하면서 실제 판매가 되어야 대리점이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비판하기 위하여 위탁대리점계약이 일반 처분문서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라는 상인(商人)간에 체결된 계약이며, 이동통신사가 전국 1,000개가 넘는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작성한 처분문서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1개월에 3~4만대 이상 액수로는 150~2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규율하는 중요도가 높은 계약인 점도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개월 단위로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르고 1,000여 개가 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에서 처분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약의 존재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고이유 제시와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원심 판결이 확정될 때 어떠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할 때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고심에 올라간 사건이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장참여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임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심의 결론이 유지된다면 위탁대리점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가능한 많은 단말기를 확보하여 판매를 시

도한 후 판매되지 않으면 재고로 반환하는 부당한 업무방식을 택함으로써 비합리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잘못된 결론에 이른 가장 큰 이유는 이동통신사 위탁대리점 거래 관계의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실질을 법원에 정확하게 설명할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건의 법률적 측면 뿐 아니라 해당 거래 관계의 실질에 최대한 접근하여 실체적인 이해관계의 참 모습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JS-Horizon

(열려라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외상투자기업 관련 분쟁 해결 사법해석 발표

김옥림 중국변호사

지난해 11월경에 의견수렴안으로 발표되었던 '외상투자기업 관련 분쟁 해결 규정'(이하 '본 사법해석')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 5일에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발표 후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총 24조항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상투자기업 관련 계약의 효력', '인허가를 받은 계약의 효력', '출자 관련 합작 당사자의 위약사항의 처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의 효력',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질권설정의 처리', '차명투자 관련 사항' 등 부분으로 의견수렴안 당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로 인허가, 차명투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외상투자기업 현행법 체계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통상 인허가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그 계약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가 필수적인 데 반해 현실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행하거나 방치하여, 이미 이행한 의무의 당위성, 방치한 경우의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사법해석에서는 상황별로 인허가 취득의 효과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상투자기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를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지만 해당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효력 미발생'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계약 체결 시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단순한 변심 같은 사유로 인허가 취득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력 미발생'으로 판정된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 내용 중에 인허가 취득 의무를 규정한 경우, 전체 계약의 '효력 미발생'과 상관없이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취득 의무 조항'은 전체 계약의 효력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이 발표되기 전에는 전체 계약의 효력과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조항은 '분쟁해결' 조항이 유일하였습니다.

둘째, 인허가가 필수인 계약의 경우, 보충계약의 체결도 똑같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법해석에서는 보충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변경한 내용이 '등록자본금, 회사유형, 경영범위, 경영기간, 주주의 출자금, 출자방식, 합병, 분할, 지분양도 등' 중대사항 또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 법원은 보충계약이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효력 미발생'으로 판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충계약이 위 사항 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당국의 개입을 줄이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추세의 반영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인허가를 받은 계약이더라도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무효로 인정하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법규정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인허가 취득은 곧바로 해당 계약이 당국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고 인허가의 취득으로 하자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에서는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명문으로 인허가와 계약의 하자, 취소 사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법정 무효, 취소 사유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질권 설정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부서규정(部門規章)에 의한 것으로 이는 행정법규보다 하위인 규정입니다. 계약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법규는 법률과 행정법규로 제한한 반면 부서규정에서 계약 체결 후 인허가를 취득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사법해석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질권설정계약은 계약 체결 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부서규정에서 의무화한 지분질권 인허가 취득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법해석이 시행된 이후 당사자는 더 이상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 미발생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바로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분질권설정계약의 인허가 효력을 부인한 만큼 실무에서도 점차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러한 사법해석의 내용이 실무기관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당분간 관행적으로 인허가 취득을 요구하는 현상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차명투자 관련하여 처음으로 사법해석 형식으로 그 효력을 언급하였습니다. 차명투자계약에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유효한 계

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차명계약은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 사법해석에는 차명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무효 또는 효력 미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명투자 당사자들이 악의로 공모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국유로 몰취하거나 단체, 제3자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악의로 공모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무효 사유 중의 하나로서 계약법에 없는 무효사유를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특별히 그 벌칙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그 해석에서 포괄적일 수 있는바, 외국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내국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경우 본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제정 절차에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요식행위보다 당사자의 의사자치 의미를 강조한 점 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JS-Horizon

(생생 러시아)

양허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과연 민간투자사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러시아에서는 양허계약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이 아직까지는 생소한 편입니다. 각종 인프라투자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금액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프라투자사업에서 법률상으로 유일한 합법적인 주체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인프라개선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예산법을 보면 현재도 장기목적프로그램 형태의 공공인프라사업예산이 주요 자금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에서 항목이 삭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경제위기 이전 러시아 연방정부는 10여 개의 교통과 산업발전부분의 대규모 공공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입찰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하였고, 러시아투자펀드(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и)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일부 사업은 추진이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러시아 연방 차원에서 다수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계약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쌍뻬쩨르부르크 풀코바 공항 현대화 재건축 운영사업, 모스크바-쌍뻬쩨르부르크 유료고속도로(15km-58km 구간) 건설사업, 모스크바-키예프 우회

도로 건설사업, 쌍뻬쩨르부르크 네바강 지하터널건설사업 등입니다. 이외에도 러시아교통부와 한국의 도로공사에 해당하는 러시아 공기업인 "로스아프토도르"는 교통인프라 관련하여 다수의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고, 쌍뻬쩨르부르크시는 시경전철 사업 입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스크바시 고위 공무원들은 언론을 통해 양허계약법을 적극 활용하여 모스크바에 4-5개의 운동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인프라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 위와 같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올 7월에 개정된 "양허계약에 관한 연방법률"(2005.7.21 제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에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법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계약형태는 다양하고 통일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양허계약이 될 수도, 러시아투자펀드가 같이 참여하는 투자약정이 될 수도, 아니면 민법을 기초로한 일반 사적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 면에 있어서도 양허계약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사업보다도(Проект на условиях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국가민간협력사업(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частное партнерстово - ГЧП)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필요성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양허하는 재산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에게 재건축,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오직 부동산만을 양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서로 연관된 동산과 부동산의 총체, 즉,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시설도 사업자에게 양허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두 번째는, 양허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의 경우 사업자 변경 절차를 규정하였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통한 양허계약 체결의 조건, 요건,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허계약의 체결, 개정, 소멸 시 국가와 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가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른 사업자에게 대한 보상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 법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소유기업이 이미 상당수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 연방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인 법규를 제정 중에 있다고 언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향후 20년간 러시아는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산업인프라, 교통인프라, 공동주택 공공사업과 건설시설사업 현대화에만 1,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는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연방수준의 교통인프라와 산업인프라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소규모민간투자사업(일반적으로 수도, 가스,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시대중교통시스템 등)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에 장기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JS-Horizon

(최신법령)

1.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의 부과 등

: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94호, 2011. 1. 24. 시행)

1.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제95조의5를 신설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3. 제96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94호, 2011. 1. 24. 시행)

2.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준 완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1. 1. 1. 시행)

1. 종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는바,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고, 해당 단시간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시간강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1. 1. 1. 시행)

3.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 범위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91호, 2010. 8. 24. 시행)

1.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개정일인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에 관하여서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동법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위 법개정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성범죄의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91호, 2010. 8. 24. 시행) JS-Horizon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 기고를 시작합니다.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지난 4월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이번 기고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다년간 글로벌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지평지성의 해외지사장 변호사들과 해외업무 수행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해외 각국의 경제 및 법률 정보를 소개하게 됩니다.

한경비즈니스 770호(2010. 9. 8.)에 게재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장인 양영태 대표변호사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기고할 예정이며,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PDF)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770 | 2010. 9. 8.

양영태 대표변호사
ytyang@js-horizon.com

[스페셜 인터뷰]

"맞춤형 법률 서비스로 해외 진출 지원"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4 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를 열었다. 법을 다루는 법무법인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법조계와 재계에 큰 화제가 됐다.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 최근 떠오르는 시장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법률 및 투자 전문가들로부터 현지 시장 현황과 투자 방향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행사였다.이 세미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법무법인...

PDF e-Link

한경BUSINESS No. 771 | 2010. 9. 15.

이행규 변호사
hglee@js-horizon.com

[Global 라오스]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증권거래소 10월 오픈

자본시장 개방···한국거래소 경영 참여

한국거래소(Korean Exchange)가 지분 투자한 라오스 증권거래소가 곧 문을 연다. 라오스 비엔티안 타임즈에 따르면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10 월 10 일 공식 출범하고 내년 1 월부터 주식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베트남에 호찌민시티 증권거래소를 만들어준 지 10 여 년 만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꽃'인 증권거래소를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에 개설해 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3 년 동안 공을 들인 끝에 라오스 중앙은행과..

PDF e-Link

JS-Horizon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Asian Counsel 주관 'Firm of the Year 2010'로 선정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노무/노동(Employment /Labour)' 및 '해운 & 해상(Maritime & Shipping)' 분야가 'Asian Counsel' 주관의 'Representative Corporate Asia Survey - Firms of the Year 2010'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Asian Counsel이 '각 지역과 전문영역에서의 우수로펌'에 대하여 아시아와 중동(UAE) 지역의 약 15,500명의 사내변호사의 설문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Asian Cousel은 홍콩의 Pacific Business Press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로서, 이번 'Firm of the Year 2010'에 선정된 로펌은 'Asian In-House Handbook 2011'에도 수록될 예정입니다.

한편, Pacific Business Press는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쿠알라 룸프르, 도쿄, 서울, 자카르타, 뭄바이, 방콕, 두바이 등을 순회하며 매년 In-House Congress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Asian Counsel [Articles & Reports]- Representing Corporate Asia 2010 (인터넷 링크)
- Asian-Counsel Special Report - Representing Corporate Asia (PDF 다운로드)

JS-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코스모화학의 새한미디어 인수관련 매각자문 제공

새한미디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8월 31일 코스모화학 컨소시엄이 새한미디어를 1,000억원에 인수합병(M&A)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코스모화학의 새한미디어 인수관련 매각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새한미디어는 2000년 5월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10월 중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 한국경제- 새한미디어 10년만에 새 주인…코스모화학, 1000억원에 인수 (2010. 8. 31.)
- 매일경제- 새한미디어, GS계열 코스모화학 인수한다 (2010. 8. 31.)
- 서울경제- 새한미디어 새 주인에 코스모화학 컨소시엄 (2010. 8. 31.)

[담당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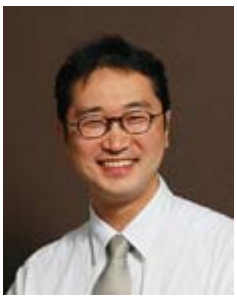

정정태 변호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호원 대표변호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거래법 관련 연구 중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지평지성의 이호원 대표변호사가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거래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JS-Horizon

금태섭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미국형사법'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태섭 변호사)

소송파트의 금태섭 변호사가 9월 1일과 8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미국형사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금태섭 변호사는 "미국 형사제도의 개요, 체포, 압수수색 절차, 배심제도" 등을 판례 및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였습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임성택 변호사, '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정책토론회 참석 外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소송파트의 임성택 변호사가 지난 8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P&A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에이블뉴스 - "P&A가 없는 장차법은 장차법이 아니다" (2010. 8. 26.)
- Walfare News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행정기관+민간단체'가 해답.. (2010. 8. 26.)

임성택 변호사가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전국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연합모임이 주최한 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전국 로스쿨 공익인권법 연합모임은 각 로스쿨의 공익인권법 관련 학회와 동아리의 연합체로 19개 학교의 단체 및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는 캠프에 참석하여 공익·인권분야 실무세계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 제3회 로스쿨 공익인권법 연합모임 워크숍 열려 (2010. 9. 3.)

임성택 변호사가 8월 26일,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행정구제절차(신소, 청원)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명한석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협회 법제연구회 및 지경부 주최 전문가 포럼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회사파트의 명한석 변호사가 8월 30일 해외자원개발협회 법제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법제연구회는 협회소속사 및 자문사의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모임입니다.

명한석 변호사가 지난 31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중동자본의 특성과 이에 맞는 투자유치전략'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명한석 변호사는 이 포럼에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초청되었으며, 관련 주제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에서 '기업실무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IP·IT팀의 김범희 변호사가 8월 30일 로앤비가 주최한 기업법무교육 과정에서 '기업실무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오랜 기간 저작권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서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저작권을 도해와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판결들과 그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유관기관이나 기업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김범희 변호사는 오는 12월에는 로앤비에서 '기업실무를 위한 특허분쟁 해설'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최정식 변호사, 지식경제부 주관 CHINA DESK 상하이 현지 자문위원으로 위촉

(사진 : 법무법인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식 변호사·상해 지사 지사장)

상해 사무소의 최정식 변호사가 CHINA DESK 상하이 현지 자문단으로 위촉되어 9월 3일 상해의 롱즈멍호텔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CHINA DESK는 지식경제부가 중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2010년 5월 KOTRA 상해 현지KBC와 한국 IK에 설치한 전담조직으로 PWC China 한국부 대표, 미래에셋 상하이 사무소장 등 중국 현지의 투자유치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한국, 中 투자유치 속도낸다 (2010. 9. 3.)

(영입인사)

김광길 변호사

kgkim@js-horizon.com

☐ 학력사항

- 광주 석산고등학교 제12회 졸업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인터넷과 법)
-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n Studies Center 방문연구원

☐ 경력사항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

☐ 주요저서 및 논문

- 개성공업지구 적용 법제의 현황과 과제 (2005 추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2006 추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 개성공단내 남측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 소유권, 저당권, 국유자산의 관리를 중심으로 (북한법 연구회 북한법연구 제10호, 2007)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광길 변호사입니다.

저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4년 10월까지 로펌 변호사로서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가 개발되기 시작하던 2004년도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과 북의 제반 법제정비를 위하여 협상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는 미국 조지메이슨대에서 미국의 대북 투자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